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 방안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퇴직연금은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무려 98.5%가 일시금으로 인출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이 미흡한 상황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자금 원천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과 기업형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여도 연금 수령에 비해 불이익이 크지 않음.
 -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나, 일시금 수령 시는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연금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분명함.
 - 기업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 수령 시 저율의 이연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이연퇴직소득세의 70%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약함.
- 주요 선진국은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형 퇴직연금의 연금화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취약함.
- 현재의 일시금 인출 현상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고 퇴직연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 연금 수령 대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데 주로 기인하고 있음.
- 시간이 지나 연금 수령 대상자가 증가하여도 선진국 대비 크게 취약한 연금화 인센티브 때문에 일시금 선호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금화 문제는 뚜렷한 결론 없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 이연퇴직소득세의 세율 인상, 일시금 인출 요건 강화 등의 정책 대안들은 과거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던 세제상의 혜택을 기득권으로 판단하는 근로자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정에 적합한 연금화 인센티브 수준을 빠르게 확정지음으로써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 장기적인 노후소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일시금으로의 인출이 대부분(2015년 기준 98.5%)을 차지하고 있어 본질적인 기능이 미흡한 상황임.¹⁾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5년 기준 가입 대상 근로자 1,135만 명 중 535만 명이 가입하였으며, 퇴직연금 수령자는 20.5만 명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변형한 형태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연금화하는 데는 취약한 구조임.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지급을 책임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일시금)에서 적립금만 사외에 위탁하도록 하는 형태로 도입되었음.
 - 기존의 퇴직금은 일시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기 때문에 연금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고는 퇴직연금의 급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환경을 평가하고 일시금 선호 현상을 축소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
 - 소득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등 퇴직연금의 급여와 관련한 제도를 검토하고 심각한 일시금 선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함.
 - 특히, 퇴직연금의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특징에 대해서도 검토함.
 - 또한, 제도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일시금 선호 현상을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

1) 본고에서 인용한 통계는 통계청 「2015년 기준 퇴직연금통계」를 기준으로 함.

2. 퇴직연금 급여 관련 제도적 환경



■ 퇴직연금은 자금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²⁾과 사용자가 납입하는 기업형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음.

● 모든 퇴직연금 자산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인출하도록 되어 있으나,³⁾ 자금의 원천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기업형 퇴직연금이나에 따라 별도의 인출 및 과세 기준이 적용됨.

■ 자금 원천이 개인형 퇴직연금⁴⁾인 경우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일시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금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명확함.

●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한 후에 인출 가능하며, 10년 이상 연금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음.⁵⁾

● 연금 수령액 중 연 1,200만 원까지는 연령별로 차등화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됨.
- 연 1,200만 원의 한도를 초과한 연금 지급액과 일시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 경우 세금 부담이 무거워짐.

■ 자금 원천이 기업형 퇴직연금인 경우 연금 수령 시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일시금 수령 시는 이연퇴직소득세 전체가 부과되지만 연금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크지 않음.

● 이연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기준 소득 공제와 연평균 환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연금소득세(3.3~5.5%)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⁶⁾

● 연금수령 조건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임.⁷⁾

2) IRP에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가 있는데 기업형 IRP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본고에서 IRP라 함은 개인이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개인형 IRP를 의미함.

3) 기업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자금이 이월된 다음 인출이 가능함.

4)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나뉘어지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고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는 연금수령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가급적 10년 이상 연금화하도록 유도함.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6) 2014년 연금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퇴직일시금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에도 실효 세율이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IRP보다 엄격한 연금 수령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건 미달에 따른 일시금 수령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연금수령 조건에 미달되거나, 의료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금 납입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도 이연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됨.
- 상기의 특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가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연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는 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임.
- 따라서 기업형 퇴직연금에서 이전된 자금의 경우 연금화에 따른 인센티브는 저율이 적용되는 이연퇴직소득세의 30%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1〉 자금 원천별 적용 과세

자금 원천	인출 유형	적용 과세
개인형 퇴직연금 ⁷⁾	연금(한도 연 1,200만 원 이내)	연금소득세(3.3~5.5%)
	연금(한도 초과)	종합소득 합산과세
	일시금(의료비 등 특례 조건)	연금소득세(3.3~5.5%)
	일시금(특례 조건 외 근로자 선택)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업형 퇴직연금	연금(한도 연 1,200만 원 이내)	이연퇴직소득세 70% 분할 납부
	연금(한도 초과)	이연퇴직소득세 70% 분할 납부
	일시금(의료비 등 특례 조건)	이연퇴직소득세 70%
	일시금(특례 조건 외 근로자 선택)	이연퇴직소득세

주: 개인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논의에서 제외함.

■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의 퇴직연금은 일시금에 보다 엄격한 허용 조건을 부여하거나 무겁게 과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DB형 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 보장을 하고 있음.

- DB형 퇴직연금⁸⁾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의 제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 일반화되어 있어 일시금 수령이 거의 불가능함.
- 또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서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을 보장함.⁹⁾
- 우리나라는 3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 급여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보장함.¹⁰⁾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1항.

8) 기업형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을 의미함.

9) 미국의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영국의 PPF(Pension Protection Fund), 일본의 후생연금기금 등이 지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2항.

- DC형 퇴직연금¹¹⁾의 경우 우리나라의 이연퇴직소득세와 같은 특례가 없기 때문에 일시금 인출 시 고율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IRP에 근로자가 납입한 자금에 대한 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퇴직 급여 보장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에 한해 예금자보험을 적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한 상태임.

3. 일시금 인출 현상의 원인



- 현재의 일시금 인출 현상은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고, 퇴직연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 연금 수령 대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음.

-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도입 기간이 대부분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가입 기간 10년이라는 연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표 2〉 참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장은 2015년 기준으로 총 30만 1,991개 사업장 중 149개로 극히 미미한 수준임.
- 법으로 인정하는 일시금 인출 사유가 많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도 일시금 인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015년 IRP에 이전된 금액은 총 10조 6,650억 원(78만 4,530명)으로 1인당 평균 이전 금액은 약 1,360만 원에 불과함.

〈표 2〉 퇴직연금 도입 기간별 사업장 구성(2015년)

(단위: 개소, %)

총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1,991 (100)	45,826 (15.2)	89,058 (29.5)	96,005 (31.8)	70,953 (23.5)	149 (0.0)

자료: 통계청(2016).

11) 기업형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을 의미하며, 개인형 퇴직연금도 큰 틀에서는 동일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시간이 지나 연금 수령 대상자가 증가하여도 선진국 대비 크게 취약한 연금화 인센티브 때문에 일시금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연금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연퇴직소득세의 세율 인상, 일시금 인출 요건 강화, 연금 지급 보장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문제는 뚜렷한 결론 없이 연금화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가 언제, 얼마나 불리하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 기업형 퇴직연금에 부여되는 별도의 인출 및 과세 조건이 IRP와 동일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 대상자와 연금 수령 기간은 급속히 증가하고 조세 부담도 무거워질 것임.
 - 연금수령 대상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인 자로 확대되며, 연금 수령 기간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증가할 것임.
 - 한도 초과 연금 수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로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임.
 - 일시금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별도 사유가 축소되어 근로자의 퇴직연금 인출이 보다 어려워질 수 있음.
-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자산을 ‘제도적 불확실성’에 노출시키기보다는 일시금 인출 조건이 유리할 때 가급적 빨리 인출하여 개인연금, 저축, 부동산 등으로 운용하려 할 수 있음.

4. 시사점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일시금 대비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한 것이 사실인 만큼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와 일시금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시금에 대해 이연퇴직소득세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득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¹²⁾

-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퇴직연금제도 안에 지속적으로 묶어 두기를 꺼려하게 되어 필요 이상으로 일시금을 선호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정에 적합한 연금화 인센티브 수준을 단기간 내에 확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근로자의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임.
- 주택마련, 의료비 등을 위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금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음.
 - 또한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65세인 점을 고려할 때 브릿지(brige)연금¹³⁾ 확보를 위해서 5년 이내의 단기 인출도 필요한 상태임.
- 퇴직급여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할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무조건 조기 인출하기보다 이를 기초로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부합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임. [kiri](#)

12) 이연퇴직소득세는 과거 일시금이었던 퇴직금제도에 적용되었던 세제인 만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주어진 기득권이 라는 견해가 강함.

13) 은퇴 시점과 공적연금 개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기간의 소득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이른바 교량적 역할의 연금을 의미함.